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추후수정)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충전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4) 신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구획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4)를 5)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 및 그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충전 전용 주차구획 부분 : 2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 ----- ----- ----- ----- -----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 ----- ----- ----- ----- ----- -----.
1) ~ 4)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

5) <신 설>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11) (생 략) 3.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u>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u> <u>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u> <u>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u> <u>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u> <u>및 그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u> <u>충전 전용 주차구획 부분 :</u> <u>2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외</u> <u>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u> 5) (현행 4)와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 1) ~ 11)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63